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29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김기표・김문수・신영대

백혜련 • 문금주 • 소병훈

전재수 · 정준호 · 추미애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요청인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영장 집행 시 영장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법치에 바탕을 둔 국가 운영의 기본이자 근간이됨.

영장 집행 방해는 여타 공무집행방해와는 달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거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행위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또한 법적 안정성과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가벌성이 더욱 크고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

또한 방해행위의 구체적 방법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영장 집행

을 위한 공무원의 진로를 인신·차벽·철조망 및 기타 다른 방법들로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함으로써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함.

이에 그 방해행위에 진로방해를 추가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1년 이상에 처하여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자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및 제144조제1항).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6조의2(영장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진로방해 등의 방법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 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44조제1항 중 "第136條"를 "제136조, 제136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6조의2(영장집행방해) 폭행
	또는 협박 기타 진로방해 등의
	<u>방법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ㆍ</u>
	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집행
	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u> </u>
第144條(特殊公務妨害) ①團體 또	第144條(特殊公務妨害) ①
는 多衆의 威力을 보이거나 危	
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u>第136條</u> ,	<u>제136조,</u>
第138條와 第140條 乃至 前條의	제136조의2
罪를 犯한 때에는 各條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